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2022.8

삼성KPMG 세무본부 TKC

Contents

I. 지방세법

취득세

- 1. 과점주주의 범위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명확화 3
- 2.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4
- 3.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 5

지방소득세

- 1.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절차 보완 6
-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7
- 3.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8
- 4.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9
- 5.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 10

II. 지방세특례제한법

- 1. 감면대상 ‘직접사용’ 범위 명확화 11
- 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12
- 3.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 13
- 4.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및 연장 14
- 5. 벤처기업 부동산 감면 연장 및 확대 15
- 6.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16
- 7.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17
- 8.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재편 18
- 9. 인구감소지역 감면 신설 20
- 10.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감면 재신설·연장 등 21
- 11. 중복 특례의 배제 명확화 22

Ⅲ. 지방세기본법

1.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23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24
3. 세무조사 개시 절차 신설	25
4.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	26
5.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	27

I. 지방세법

취득세

1 과점주주의 범위 등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명확화(안 법§7)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p>□ 지방세법 제7조는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간주취득세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p> <p>- 과점주주의 개념을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에서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음</p>	<p>□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u>과점주주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u></p>

□ 개정이유

- 현재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개념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간주취득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안 법§7)

□ 개정개요

※지특법(§74) 동시개정

현 행	개 정 안
<p>□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치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 및 취득원인(원시·승계·지목변경) 불분명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 및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p>□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과세체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를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등 과세대상별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u>원시취득으로 과세</u> - (토지) <u>증가한 면적에 대해 과세</u> - (지목변경, 도시개발사업) <u>환지면 적기준 지목변경 과세</u>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과세체계는 지방세법에서, 감면은 <u>특례제한법에서 규정</u>

□ 개정이유

-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치 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과 취득원인(원시·승계·지목변경)이 불분명
 -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토지는 종전보다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토록 하는 등 취득세 과세원리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다만, '23. 1. 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3

합병·분할에 대한 취득세 세율체계 명확화(안 법§11)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합병·분할에 대한 명시적 세율규정 부존재 <input type="radio"/> 해석과 예규에 의해 무상(3.5%), 유상(4%) 적용	<input type="checkbox"/> 합병·분할에 대한 세율을 명시적으로 규정 <input type="radio"/> 합병·분할에 따른 <u>자산의 취득과 교부하는 주식</u> 을 대가관계로 보아 <u>유상세율 적용</u>

□ 개정이유

- 현재 법인의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명시적 세율이 존재하지 않아, 법인의 합병·분할에 대한 세율은 법에서 명시
 - 피합병법인의 주주·분할법인(또는 그 주주)에게 주식 등 대가가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상취득으로 적용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지방소득세

1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절차 보완(안 법§85①, §103의37⑤)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u>완전</u>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세액 납부 ○ (연결모법인) 연결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 ○ (연결자법인)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u><신 설></u>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u>90% 이상</u>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세액 납부 <좌 동> <좌 동> - <u>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음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u>

□ 개정이유

- 연결납세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배분방법 보완

□ 적용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안 법 §103의3①)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 「소득세법」에 따른 <u>‘대주주’</u>	<input type="checkbox"/> 과세대상 변경 ○ 「소득세법」에 따른 <u>‘고액주주’</u>

개정이유

-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안 법 §103의19②, 103의34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p>□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p> <p>○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은 경우</p> <p>-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 - 직접·간접·간주 외국법인세액</p> <p><u><신 설></u></p>	<p>□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p> <p>○ (좌 동)</p> <p>○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고 이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 경우</p> <p>- <u>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 - 간접투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u></p>

□ 개정이유

- 간접투자회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은 법인투자자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국세 개정사항*과 연계)

*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개선(기존 간접투자회사 단위 → 변경 투자자 단위)

□ 적용시기

- '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4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법§103의20①)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input type="checkbox"/>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	5억원 이하	1% (중소·중견기업)
2억원 ~ 200억원	2%	5 ~ 200억원	2%
200억원 ~ 3,000억원	2.2%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5%		

개정이유

-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안 법§103조의31⑦)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재해 발생 시 별도규정 없음 <u><신 설></u>	<input type="checkbox"/>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신설 <input type="radio"/> <u>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u>

개정이유

-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既 적용 중

적용시기

- '23.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II. 지방세특례제한법

1 감면대상 '직접사용' 범위 명확화(안 법§2① 등)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p>□ 감면대상 직접사용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칙)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 (일부 개별조문) “임대는 제외” 토록 재차 규정* <p>* “임대는 제외” 문언이 없는 규정에서는 “임대 포함”으로 해석될 여지</p>	<p>□ 직접사용 범위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칙) “임대는 제외” 명시 ○ (일부 개별조문) “임대는 제외” 토록 규정한 문언 삭제* <p>* 총 16개 개별조문 체계 정비</p>

□ 개정이유

- 총칙 규정(법 §2①8)에서 “임대는 제외”토록 명시하고, 일부 개별조문에서 해당 문언을 삭제(법 §14② 등 16개 조문*)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임대가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화

* 제 14조제2항·제3항, 제 16조제2항, 제 21조제1항, 제 23조제1항, 제 33조제3항, 제 36조의2제2항, 제 36조의3제4항, 제 40조제1항, 제 40조의3, 제 47조, 제 48조, 제 53조, 제 58조의3제1항·제2항, 제 75조의3제2항, 제 81조의2제2항, 제 88조제1항·제2항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안 법§4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p>□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한 감면</p> <p>○ (제한) 법정 항목*은 조례감면 不</p> <p>* 법정 ①감면율·②감면액·③세목· ④기간·⑤대상자·⑥대상</p>	<p>□ 조례 등 감면 가능범위 확대</p> <p>○ (제한) <u>조례 감면으로 불가능한 법정 항목*</u> 축소</p> <p>* 법정 ①감면율·②감면액·③세목· ④기간·⑤대상자 ※ ⑥대상 제외</p>

□ 개정이유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조례 등 감면지원 범위 확대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감면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안 법§2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p>□ 사회복지법인등의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 등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 및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한센인협회, 일부 복지시설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연면적, 종업원분) 100% - (대상 확대·재편) - (대상 확대·재편) -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 : 등록면허세 100% -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 주민세(사업소분·기본세율) 100% ○ 일몰기한 : '22.12.31 	<p>□ 감면대상 확대 및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 및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한센인협회 : 현행과 같음 - 무료 복지단체 : 취득세·재산세 50%*, 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100% * 조례로 50%p 한도로 추가지원 可 - 유료 복지단체 : 취득세·재산세 25%*, 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100% * 조례로 50%p 한도로 추가지원 可 - (좌 동) - (좌 동) ○ <u>일몰기한 : '25.12.31.</u>

□ 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사업 지원 확대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4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및 연장(안 법§46①~④)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35~60% 재산세 35~50%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10%p 추가 감면 ○ 일몰기한 : '22.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확대 및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15%p 추가 감면 ○ <u>일몰기한 : '25.12.31.</u>

개정이유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 (「조특법」 시행령 별표7)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 ③ 통신 ④ 바이오 ⑤ 원자력 ⑥ 항공·우주 ⑦ 반도체 ⑧ 탄소중립 등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5

벤처기업 부동산 감면 연장 및 확대(안 법§58④)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부동산 감면 <input type="radio"/> 취득세 37.5% <input type="radio"/> 재산세 37.5%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 '22.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확대 <input type="radio"/> 취득세 50% <input type="radio"/> 재산세 35%(조례 15%p 추가 可) <input type="radio"/> <u>일몰기한 : '25.12.31.</u>

개정이유

- 벤처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58의2①②)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35% - 재산세 37.5% ○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50% - 재산세 37.5% ○ 일몰기한 : '22.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35%(수도권 제외) - 재산세 35%(5년 간) ○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35%(수도권 제외) - 재산세 35%(5년 간) ○ <u>일몰기한 : '25.12.31.</u>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증여, 他 용도 사용 	<input type="checkbox"/> 사업유형(분양·임대·직접사용)별 사 후관리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분양 : 미분양, 임대 : 미임대, 직접사용 : 매각·증여 등</u>

개정이유

- 수도권 과밀 방지 및 산업집적 활성화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다만, '22.12.31. 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한도로 재산세 감면 적용

7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71①~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물류단지 부동산 감면(§71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재산세 35% ○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50%·재산세35%(5년) ○ 일몰기한 : '22.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35%, 재산세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10% 추가 可 ○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u>일몰기한 : '25.12.31.</u>
<input type="checkbox"/> 복합물류터미널 부동산 감면(§71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 '22.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25% ○ <u>일몰기한 : '25.12.31.</u>

개정이유

-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8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재편(안 법§74①~⑥)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p>□ 도시개발·재개발사업 조합원 취득세 과표 산정(§74①·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합원) 청산금 상당액 ○ (승계조합원) 종전 부동산 초과액 <p>□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체비지·보류지 감면(§74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75% ○ 일몰기한 : '22.12.31. <p>□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소유자 감면(§74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비지·보류지 등 : 취득세 75% ○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이하의 주택 등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22.12.31. <p>□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소유자 감면(§74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조성 목적 취득 부동산 등 : 취득세 50% ○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별 1주택 限(청산금) : 취득세 50~75% ○ 일몰기한 : '22.12.31. 	<p>□ 「지방세법」으로 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합원) 삭제, 지방세법 이관 ○ (승계조합원) 삭제, 지방세법 이관 <p>□ 감면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u>일몰기한 : '25.12.31.</u> <p>□ 감면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u>일몰기한 : '25.12.31.</u> <p>□ 감면 연장 및 재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별 1주택 限 : 취득세 50~75% ○ <u>일몰기한 : '25.12.31.</u>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추정규정 신설 <input type="checkbox"/> <u>체비지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 여 1년 이내에 분양하여 경비 에 충당하지 않은 경우</u>

개정이유

- 주택공급 지원 및 감면제도 합리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다만, '23.1.1. 전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종전 감면 규정 적용

9

인구감소지역 감면 신설(안 법§75의3①, §75의5)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인구감소지역 內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input type="radio"/> (사업전환 중소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년 50% <input type="radio"/> (창업기업 등)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3년 50%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10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감면 재신설·연장 등(안 법§81)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이전공공기관 감면	<input type="checkbox"/> 재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등록면허세 100% ○ <u>일몰기한 : '25.12.31.</u>
<input type="checkbox"/>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면적별 62.5~100% ○ 일몰기한 : '22.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u>일몰기한 : '25.12.31.</u>
<input type="checkbox"/>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징) <u>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관 이전일 또는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매각·증여</u> * 사망, 혼인, <u>해외이주</u>, 정년퇴직, <u>파견근무</u> 또는 <u>부처교류</u>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징) <u>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 또는 상시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다른 용도 사용</u> * 사망, 혼인, 정년퇴직

□ 개정이유

-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및 과세 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중복 특례의 배제 명확화(안 법§180)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p>□ 중복감면 배제*</p> <p>* 둘이상 해당시 유리한 감면 하나만 적용</p> <p>○ (중복배제 범주 “감면”) 중과세 배제 등도 포함 여부 불명확</p> <p>○ (배제 범위) 별도기준 無</p> <p>○ (배제 예외대상) 제74조</p>	<p>□ 용어의 정의 및 배제범위 명확화</p> <p>○ (중복배제 범주 “특례”) 중과세 배제 등이 포함되도록 용어 명확화</p> <p>※ (법 §2①6) 특례 :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u>중과세 배제</u> 등</p> <p>○ (배제 범위) <u>동일 세목에 한정</u>토록 명확화</p> <p>○ (배제 예외대상) 제74조의2</p>

□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 제도의 합리성 및 통일성 제고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Ⅲ. 지방세기본법

1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법§38③)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판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부과가능	<input type="checkbox"/> 판결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좌 동) ○ <u>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u>

□ 개정이유

-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로 과세 형평 제고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안 법§50②)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판결에 의하여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시	<input type="checkbox"/>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 판결 외에도 <u>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u> 추가

□ 개정이유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부터 적용

3

세무조사 개시 절차 신설(안 법§83④ 등 신설)

□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연기신청 <input type="checkbox"/>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연기신청 <u>사유 소멸 후 조사개시</u>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조사개시 <u>근거 및 절차 마련</u> * (사유) ①연기신청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한 경우 * (절차) 조사개시 5일전까지 통보 등

□ 개정이유

- 세무조사 연기 후 개시절차 신설로 지방세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4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안 법§84의4 신설)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 조사진행 중에는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 확대 예외사유는 시행령으로 위임 ○ 조사범위 확대시 <u>납세자에게 통지</u>

개정이유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5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안 법§89)

□ 개정개요

※ 국세 일치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불복청구 대상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	<input type="checkbox"/> 불복청구 대상 <u>확대</u> ○ (좌 동) ○ <u>이해관계인 추가</u> - 납부통지서를 받은 <u>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u> - <u>보증인</u> *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 신탁재산수탁자, 양도담보권자, 종중

□ 개정이유

- 이해관계인으로 불복청구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 적용시기

- '23. 1. 1. 이후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